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
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서류의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19. ~ 2. 3.)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라목 중 “제10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·재고관리대장
제10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아목을 마목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(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)

마.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

바.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

사.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·재고관리대장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

가.·나. (생략)

다.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(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)

라. (생략)

마.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

바.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

사.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·재고관리대장

아. (생략)

3.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

가.·나. (생략)

다.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

라. (생략)

<신설>

2. -----
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다. (현행 라목과 같음)

라.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·재고관리대장

<삭제>

<삭제>

마. (현행 아목과 같음)

3. -----
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(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)

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
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u>빙서류</u></p> <p><u>바. 원가계산서 · 원재료내역</u> <u>서 및 공정명세서</u></p> <p><u>사.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</u> <u>납 · 재고관리대장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72